

이 자료는 4월 5일(목) 11: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실제 말씀은 별첨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

## 정례브리핑 모두 말씀

2007. 4. 5(목)

1. 한미 FTA 의의 및 추진계획과 주요쟁점 / 1
2.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/ 8
3. 최근 경제동향 / 10
4. 사금융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 / 15

재정경제부  
홍보관리팀

1

### 한미 FTA 의의 및 추진계획과 주요쟁점

먼저, 이번에 체결된 한미 FTA의 의의와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

#### [ 한미 FTA의 의의 ]

- ① 이번 한미 FTA 체결로 우리는 선진경제 달성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
  - 또한, 향후 한·EU, 한·중 FTA 추진을 통해 세계 3대 시장(미국·EU·중국)을 선점하고, 세계에서 가장 개방되고 국제화된 국가가 되기 위한 기초를 세운 것으로 평가함
- ② 먼저, 이번 협상 결과로 우리 경제는 교역 증대 및 투자 확대, 나아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
  - 자동차, 섬유 등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 및 중소기업들 위주인 고관세 품목(가죽·고무·가방 등)들의 관세가 철폐되어, 일본·중국·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앞서 세계 최대규모의 미국시장<sup>\*</sup>을 선점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,

\* 미국 수입시장 규모(2005년) : 1.7조불

- 이를 통해 그간 미국시장에서 약화되고 있던 경쟁력을 회복하고 EU, NAFTA에 이은 세계 3대 경제블럭권\*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음

\* 2006년 기준 경제규모(GDP) : EU 약 15.3조불, NAFTA(미국+캐나다+멕시코) 약 15.1조불, 한국+미국 약 14.1조불

- 또한, 이번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틀을 선진국형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마련되는 한편
  - 비록 교육·의료 등 일부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지만, 금융, 법률, 방송·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 시장 개방을 대폭 앞당기게 되어

국제적 규범 하에서,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시스템 전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함

- ③ 이번 협상이 양국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「Win-Win」 전략을 통해 균형있는 플러스섬(Plus Sum)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미국 측도 이번 협상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봄
- 농수산물, 자동차시장, 금융·법률 등 기업 지원 서비스 등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이 가시적 성과이기는 하나

- 이러한 가시적 성과보다는 우리 제도의 투명성과 국제규범과의 정합도를 높임으로써,
  - 자국투자자의 한국투자 또는 진출을 위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다 원활한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 등 눈에 보이지 않은 성과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
    - 예컨대, 지적재산권 강화, 입법예고기간 연장, 약가 결정과정에서의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도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창구 마련, 투자자-국가간 분쟁 제도(ICS) 도입 등이 이러한 범주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임
  - 그러나, 이러한 제도는 우리로서도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스스로의 필요로 도입하여야 할 변화라고 할 수 있음
    - 비록 이번 FTA 타결이 계기가 되었지만, 이러한 제도 변화는 미국을 포함한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해 외국자본의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믿고 있음
- ④ 정부는 앞으로 이번 한미 FTA로부터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가운데,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임

## [ 향후 추진계획 ]

- 앞으로 협정문 서명, 비준 과정 등을 통해 협상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·논의과정이 있겠지만, 정부는 협상내용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토록 할 것임
- 먼저, 분야별 합의내용은 어제 외교부에서 자세한 자료를 공개한 바 있으며, 앞으로도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보고와 설명이 이루어질 것임
- 협정문과 관련해서는 합의내용의 문안표현·자구 등에 대한 한·미 양국간 최종 확인절차가 끝나는 대로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공개될 것인 바, 가급적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임

## [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]

- 이 자리를 빌어 한미 FTA 협상타결후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제기되었거나,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함

## ( 美 쇠고기 수입검역문제 )

- 여러차례 미 쇠고기 수입검역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나, 아직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있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림

- 쇠고기 검역문제는 미업계와 의회의 강력한 요구, 빼조각 반송문제로 인한 미측의 불신 등이 작용하여 어려움에 직면하였던 것이 사실임
- 그러나,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재개문제는 FTA와 별개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켰으며,
- 국제수역사무국(OIE)의 평가결과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해 나가되,
-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절차에 따라 신의를 가지고 검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음
- 양국 정상간의 대화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,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함

## ( 개성공단 )

- 개성공단 합의내용과 관련하여 양국간 해석차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, 정확한 합의사항을 말씀드리면,
- 한미 양측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부속서(Annex)를 채택하였는 바,
- 동 부속서에 의하면 양국은 「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」를 설치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음

- 동 부속서에 개성공단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나 이를 당연히 주 대상으로 고려한 것이며, 나아가
  - 개성공단을 포함한 다른지역도 요건이 충족되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

#### ( 감귤 피해 )

□ 일부에서 감귤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, 협상결과와 현재 감귤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그 피해는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.

① 우선, 노지감귤은 집중 출하·소비시기인 9월~2월에 현 관세(50%)가 유지되므로 FTA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

② 또, 동 기간중 수입되는 무관세 쿼터(2,500톤, 매년 3%증가)는 주 출하시기 감귤 생산량의 3.6%수준에 불과하며, 매년 쿼터증량폭도 매우 적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봄

\* 매년 3% 증가률량은 노지감귤물량 대비 0.11% 증가에 불과

③ 아울러, 감귤과 오렌지는 품목의 차별성, 국내 감귤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으로 대체관계가 낮고,

- ④ 한라봉이나 하우스 감귤은 3월부터 6월사이에 생산되고 있어 오렌지와의 경합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,
  - 이들 품목은 지금도 가격차가 커서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, 품질차이에 따른 수요층의 차별화로 美 오렌지 가격변화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
    - \* 비수학기(3월~8월) : 30%관세 7년간 철폐
    - \* 하우스 감귤은 오렌지의 2.6배, 한라봉은 약 3배 수준

#### [ 당부 말씀 ]

- 앞으로도 한미 FTA에 협상결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함
  - 그러나, 협상결과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나 주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
- 정부는 앞으로 협상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여 막연한 불안감이나 의문을 불식시키고, 반대하는 분들과의 토론이나 의견수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
  - 또한, 국회비준과정에서 협상결과와 그 손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하는 기회를 가질 것임
-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보다 건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

##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

-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안만이 통과되었음
- 정부는 지난 4월 3일, 이에 대한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는바, 오늘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자 함
- 현행 국민연금은 “저부담 · 고급여” 구조로 설계되어 204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제도개혁이 시급한 상황임
- 연금개혁이 늦어지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,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제도자체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
  -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, 2047년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연금을 지급하려면 근로세대가 소득의 30% 이상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함
-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은 하나의 정책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으로 제안된 것이며, 국민연금법의 개정 없이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

- 이번 연금개혁의 목표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, 기초노령연금 시행을 통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었음
- 그러나,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만 시행되게 되면,
  - 다음 세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새로운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재정부담이 가속적으로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
    - \* 기초노령연금 소요재원  
: ('08) 2.4조원 → ('10) 3.5조원 → ('30) 19.1조원 → ('50) 67.1조원
- 기초노령연금법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
- 최근 열린우리당,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, 4월 임시국회중 가시화 되기를 기대함
- 정부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재논의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임

## 최근 경제동향

- 금년 1/4분기가 지난 만큼 최근 경제의 흐름을 점검해 보고,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말씀드리겠음

### [ 최근 경제동향 ]

- ① 최근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上低下高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
- 1~2월에는 설명절 이동(설날 작년 1월 → 금년 2월) 등 불규칙 요인도 있었으나, 전반적으로 소비, 투자 등 내수지표와 이와 관련된 심리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
  - ② 먼저, 1~2월중 산업생산, 서비스업 활동 등 실물지표에 나타난 실물경제 움직임을 살펴보면,
  - 민간소비는 작년 2/4분기 이후의 조정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, 금년 1~2월 소비재 판매가 다소 크게 증가(7.3%)하는 등 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

국민계정상 민간소비 추이(%)

	2004	2005	2006				
	연간	연간	연간	1/4	2/4	3/4	4/4
전년동기대비	△0.3	3.6	4.2	5.2	4.1	4.0	3.7
계절조정 전기비	-	-	-	1.2	0.6	0.9	1.0

\* 소비재 판매(%) : (06.1/4)5.3 (2/4)6.1 (3/4)2.9 (4/4)4.5 (07.1)27 (2)124 (1~2)7.3

- 한편, 설비투자는 1~2월에도 설비투자추계가 크게 증가(13.9%)하는 등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을 유지하였으며, 건설투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, 1~2월 건설기성은 나쁘지 않은 모습(9.4%)임

국민계정상 투자 추이(%, 전년동기대비)

	2004	2005	2006				
	연간	연간	연간	1/4	2/4	3/4	4/4
설비 투자	3.8	5.7	7.6	7.0	7.2	11.1	5.3
건설 투자	1.1	△0.2	△0.4	0.2	△5.0	△0.1	3.2

- \* 설비투자추계(%) : (06.1/4)6.2 (2/4)6.7 (3/4)11.8 (4/4)5.1 (07.1)15.4 (2)124 (1~2)13.9
- \* 건설기성(%) : (06.1/4)4.2 (2/4)△0.3 (3/4)4.8 (4/4)6.0 (07.1)10.5 (2)8.3 (1~2)9.4
- 수출은 2월에 설이동 효과의 영향을 일부 받았으나, 금년 1/4분기중 15.0% 증가하여 두자리수 증가율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,
  - \* 수출(통관, %) : (06.1/4)10.6 (2/4)16.9 (3/4)16.3 (4/4)13.8 (07.1)20.8 (2)10.5 (3)14.0 (1/4)15.0
-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대로 금년들어 균형수준에서 소폭 등락하는 모습임(1월 4.3억불 적자, 2월 4.9억불 흑자)
- ③ 다음으로,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심리지표의 움직임을 살펴보면,
- 가까운 미래의 소비자 행태를 예전해 볼 수 있는 소비심리지표(CSI)는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

- 한은 소비자 심리지수의 경우 작년 4/4분기와 금년 1/4분기 두분기 연속으로 상승하였으며, 통계청 소비자 기대지수도 작년 12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

한은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

05.1/4	2/4	3/4	4/4	06.1/4	2/4	3/4	4/4	07.1/4
108	102	97	107	109	101	96	98	103

통계청 소비자 기대지수 추이

06.4	5	6	7	8	9	10	11	12	07.1	2
100.6	98.0	97.4	94.3	93.7	94.8	93.9	95.2	93.7	96.1	98.1

- 한편, 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도 소비심리지표와 마찬가지로 최근 상승하고 있어 향후 경제주체들의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임

\* 3월 실적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고, 4월 전망은 소폭 상승하거나 보합세를 유지

기업경기실사지수

	06.8	9	10	11	12	07.1	2	3	4
실적	· 한 은	72	84	86	83	82	80	80	83
	· 전경련	85.9	99.4	99.4	103.7	96.5	85.6	87.5	109.4
	· 중기 협	75.1	83.8	82.3	81.9	80.0	76.7	75.4	85.5
전망	· 한 은	79	84	90	92	86	83	83	89
	· 전경련	93.4	107.7	103.5	104.3	101.4	100.4	93.4	112.3
	· 중기 협	82.1	90.0	89.9	90.2	86.4	84.0	82.9	90.9
									91
									107.7
									96.2

## [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]

### ① 현재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,

-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의 견실한 증가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
- 소비, 투자 등 내수지표와 이와 관련된 심리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상황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
- 이는 연초에 예상했던 上低下高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서,
- 현재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당초 전망대로 금년에 연간으로 4%대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됨

### ② 정부는 앞으로 경기진폭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잠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

-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세, 미국경기 둔화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해 나가는 한편,

\* Dubai유(\$/B, 기간평균) : (05)49.4 (06)61.6 (07.1)51.8 (2)55.9 (3)58.9 (4.3)63.9

\* 미국은 주택경기 조정 등으로 작년 2/4분기 이후 경기가 둔화 <성장률(연율, %) : (06.1/4)5.6→(2/4)2.6→(3/4)2.0→(4/4)2.5>

- 기업환경 개선,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, 인적자본 육성 등 성장동력 확충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음

- 또한, 한미FTA의 타결에 따라 우리 경제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
- 이를 경제심리를 개선해 나갈 계기로 활용해 나가는 한편,
- 부문별로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후속보완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

4

## 사금융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

마지막으로, 이미 국회 답변과정을 통하여 시사한바 있지만, 등록·무등록 대부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의 중간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자제한법 제도입에 동의한 배경과 함께 대부업 관련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

\* 보도참고 자료 「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」 별도 배포

### 1. 실태조사의 배경

- 작년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제기된 바다이야기는 정부차원에서도 대부업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
- 이에 따라 정부는 법무부, 행자부, 금감위 등이 참여하는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지난 연말부터 집중적으로 대책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, 그 첫 단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임

### 2. 실태조사 개요

- 이번 실태조사는 행자부·금감위 공동주관으로 작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총 17,538개의 대부업체(개인 업자 포함)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며, 이중 실적을 제출한 4,470개를 대상으로 한 분석한 결과임

- 비록 업체수로는 25% 정도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나, 대형업체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다고 판단됨
- 이와 함께 재경부·금융연구원 주관으로 29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이용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,
-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정보의 대부업 이용자 관련 자료 등에 대하여 종합분석을 병행하였음
- ### 3. 사금융 시장의 주요특징
- 금번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사금융 시장의 주요특징은 다음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봄
- ① 첫째,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약 18조원으로 추산되며, 이중 등록업체가 약 8조원 정도를 소화하고 나머지 10조원 규모는 불법 사채업자의 영역이라고 추정됨
  - ② 등록 대부업 이용자는 대부분 제도권 금융기관을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, 이용규모는 1인당 평균 500만원 정도의 소액임
  - 반면 무등록 대부시장 이용자는 등록 대부업체 이용 조차 거부될 정도로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며, 오히려 초고금리일수록 대부잔액이 늘어나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음
  - 이는 부채상환을 위해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의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보며, 이는 이용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추심행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의미함
- ③ 셋째, 최근 외국계 자본의 진출과 대형 대부업체의 확산으로 대부업 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
-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제도권 서민금융기관과 비슷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나,
  - 소형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위험·저수익 영업을 하고 있음
- ④ 넷째, 고금리 이용자의 대부시장 이용목적은 의료비, 교육비 등 일시적 요인과 채무상환 등 반복가능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음
- 이는 고금리 이용자의 일시적 사유에 의한 자금 이용에 대하여 대체자금 활용 체널이 마련될 수 있다면, 대부시장 이용 유인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

#### 4. 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책방향

□ 이러한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대부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몇가지 정책방향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었음

① 첫째, 고금리 이용자의 일시적 자금 이용에 대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, 이자제한법의 제도입에 동의하게 되었음

- 이는 고금리의 이용자의 사금융 시장진입을 사실상 차단해 줌으로써, 대부시장의 시장실패를 보다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음
- 또한 이번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가 구법과는 달리 무등록 사채업자와 사인간 거래에만 한정됨으로써 전체 대부시장의 충격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과
- 사회통념을 초과하는 고리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\*도 감안하였음

\* 대법원 판례 요지

- 이자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면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
-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허용되며, 이미 지급한 원리금에 대해서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

② 둘째, 고금리 이용자의 일시적 자금 이용에 대한 이용목적별로 대체자금 이용 채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임

- 예컨대 자활자금의 경우 대안 금융, 의료비의 경우 긴급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확충해 나갈 것임
- 이를 위해 재경부,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/F를 구성·운영토록 할 것임

③ 셋째,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상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면서 대부업 관리·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임

- 이자율 상한의 경우, 고금리 이용자의 사금융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경우, 이용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약화됨으로써 대부업자의 역선택의 여지도 축소될 수 있다는 점과
- 현행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에 비해 30%p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

□ 앞으로 4.11(수)에 있는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